C - 75 - 2013

조경공사(수목식재작업)의 안전보건작업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조경공사의 수목식재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장비에 의한 끼임, 자재 양중시 맞음, 근로자의 떨어짐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작업별 안 전보건작업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조경공사의 수목식재작업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(가) "조경공사"라 함은 건축물 주변 대지에 수목식재,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.
- (나) "수목식재작업"이라 함은 나무를 심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작업을 말하며, 지피식물은 지표를 낮게 덮는 식물을 이르는 것을 말한다.
- (다) "수목정지"라 함은 수목을 식재목적에 맞도록 나무의 가지나 줄기 및 잎의 일부를 잘라내는 작업을 말한다.
- (라) "가이식"이라 함은 수목의 향후 본 이식을 목적으로 임시로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.
- (마) "수목굴취"라 함은 산림 안에 살아 있는 나무를 다른 장소로 옮겨심을 목적으로 나무의 뿌리까지 캐내는 행위를 말한다.